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함)과 MPMS(MASTERCARD PREPAID MANAGEMENT SERVICES LIMITED, 이하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라 함)가 제휴하여 은행이 발급하는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은행과 회원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란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카드 1장에 최대 11가지의 해외통화를 충전하여 마스터(Master)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해외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지 통화를 인출하거나 해외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충전식 여행자카드입니다.
- ②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③ '가맹점'이란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 ④ '카드고객센터'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운용은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가 합니다.

제3조 (발급)

- ① 카드 발급대상은 만14세이상 국민인 거주자(개인고객에 한함)입니다.
- ② 회원은 카드발급 신청시 은행이 정하는 소정 양식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 매수는 1인 1매로 제한됩니다.
- ③ 회원은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회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제4조 (비밀번호 PIN)

- ① 회원은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한 후 카드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여 비밀번호(PIN) 네자리를 확인 하고, 확인한 비밀번호(PIN) 용지를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카드 비밀번호(PIN) 및 카드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카드 비밀번호(PIN)를 분실한 경우 카드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카드번호, 생년월일, cvc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후 비밀번호(PIN)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해외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CD•ATM기'라 함), 가맹점 등에서 비밀번호(PIN)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비밀번호(PIN)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이 카드 비밀번호(PIN)를 24시간 내에 연속하여 3회 오류 입력하는 경우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 24시간내에 비밀번호(PIN)가 3회 오류 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해제 됩니다.
- ⑥ 카드 입력에 장애가 있거나 가맹점에서 칩과 비밀번호 (PIN)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카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은 가맹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거래를 요청하여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유효기한)

- ① 카드 앞면에 기재된 유효기한(카드 제작 해당 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회원은 환불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은행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제6조 (충전)

- ① 카드에 충전가능한 통화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 가능 통화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충전 가능 통화 : USD, GBP, EUR, AUD, CAD, JPY, SGD, HKD, NZD, CHF, THB
- ② 카드 충전 시 적용되는 외국환 환율은 영업점 및 스마트폰 banking 앱에서 확인가능하며, 충전 신청시점의 은행이 고시한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충전환율”로 합니다.
- ③ 회원은 회원 본인 명의의 원화 요구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원화 현찰을 납부하여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충전의 제한)

- ① 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회원의 카드 충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 충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③ 충전 및 재충전시 최저 한도는 미화 10불 상당액, 최대 한도는 미화 10,000불(잔액기준) 상당액(거래 취소, 환불 등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는 예외 적용)으로 미화 10,000불 이내 국내외 충전이 가능하며, 누적 충전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충전 잔액이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누적충전금액은 영업점 방문 시점 기준으로 재산정 됩니다. 단, 영업점 방문 이후 미화 10,000불 범위내 잔여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충전 가능합니다.
- ④ 카드의 충전 연간 한도는 카드 발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충전 가능한 금액은 충전 시 기준 미화 100,000불 상당액 입니다.
- ⑤ 카드의 연간 최대 충전한도를 초과하거나 해당 카드가 분실, 도난 등 사고 신고된

경우에는 카드 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

- ① 회원은 카드의 유효기간동안 카드의 충전 잔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시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카드로 할부 결제 및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해외에서 마스터(Master)카드, Maestro, Cirrus 마크가 부착된 CD•ATM기로부터 외화현찰을 인출하기 위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인출한도는 1일 최대 미화 2,000불 상당액 입니다.
- ④ 회원은 마스터(Master)카드 가맹점(온/오프라인 포함)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한도는 1일 최대 미화 10,000불 상당액입니다.
- ⑤ 일부 국가의 경우 카드의 사용 및/또는 인출 가능 한도액이 CD•ATM기 관리업체 및 해외 가맹점 또는 해외 현지법규정에 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CD•ATM기 관리업체 및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은 국내 가맹점 및/또는 국내 CD•ATM기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CD•ATM기 및/또는 현지 가맹점에 마스터(Master)카드 마크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경제 및 무역제재 국가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제 국가는 스마트폰뱅킹 앱 문의사항에 게시됩니다.
- ⑦ 카드를 이용한 각 거래대금 및 관련 수수료는 회원의 카드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 ⑧ 카드에 충전된 해당 통화 잔액이 거래 금액에 부족한 경우, USD, GBP, EUR, AUD, CAD, JPY, SGD, HKD, NZD, CHF, THB의 통화 순서대로 변경되어 재환전 거래됩니다.
- ⑨ 충전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카드 사용시 재환전 수수료가 발생되며, 이 경우 마스터카드가 정한 환율에 의해 거래대금이 차감됩니다.
- ⑩ 카드를 지불 보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정지시킨 예상결제금액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맹점이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이 카드에서 결제됩니다.
- ⑪ 카드를 정기적인 자동 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카드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 금액에 미달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⑫ 회원은 카드를 사용하는 해당 국가의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⑬ 회원은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⑭ 회원은 카드 사용 후 거래취소로 인한 환불 등으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카드 사용 시 거래된 통화로 카드에 직접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카드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통화를 사용 후 환불되는 경우에는 미화(USD)로 입금됩니다. 환불대금의 입금 시 적용환율은 카드 사용 시 거래 환율이 아닌 환불 시점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제9조 (수수료)

본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ATM 인출수수료(CD•ATM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 환불수수료(미사용 충전 잔액 환불), 재환전수수료(충전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카드사용)가 발생되며,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카드사용 안내문과 및 스마트폰뱅킹 앱에 게시합니다. 상기 수수료가 제휴사 정책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 20조 약관 변경승인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은행 또는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앞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 비밀번호(PIN)를 연속하여 3회 오 입력한 경우
- ② 카드가 부정 사용되었거나 혹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③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④ 카드의 불법적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⑤ 카드 이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11조 (재환전 거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재환전 거래가 되며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카드 거래 시 사용하는 통화의 충전금액이 거래시 부족하여 다른 충전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CD•ATM기 포함)
 - 2. 회원이 카드에 충전되지 않은 통화로 거래(온•오프라인 포함)를 하는 경우 (CD•ATM기 포함)
- ② 재환전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대금 및 관련 수수료는 매입일자에 마스터카드가 고시한 환율에 의해 결제통화로 환산됩니다. 매입일자의 환율은 거래일자의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의 재환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제9항의 통화순서에 따라 각 통화 잔고로부터 제2항의 재환전 환율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합니다. 인출되는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④ 제 6조 제1항에서 정한 11개 통화 외 기타 통화로 거래 시에는 해당 금액 상당의 미화(USD)로 결제되며 재환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12조 (카드의 잔액 및 거래 내역 확인)

- ① 회원은 카드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은행의 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 앱에서 카드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의 거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은행 및/또는 카드 고객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며, 카드 거래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뱅킹 앱에 첨부된 “이의 제기 양식” 작성하여 카드 고객센터로 이메일을 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는 카드거래내역에 대하여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거래 금액의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제공)

- ① 은행은 이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합니다.
- ② 은행은 카드서비스 제공자인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에게 카드이용과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영문 이름, 영문 주소,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카드 해지 및 환불)

- ① 회원은 카드의 유효기한 내에 언제든지 카드 해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카드의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통화별 환불 최소 금액은 미화 10불 상당액 이상이며, 통화별 잔액이 미화 10불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불수수료가 환불 금액보다 큰 경우 환불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징구 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의 환불요청에 따라 은행이 고시한 “글로벌페이스카드 환불 환율”을 적용하여 마스터카드에서 정한 환불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화로 환불합니다.
- ③ 카드의 부정사용 등 분쟁대상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은 모든 거래의 결제가 완료된 후 카드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④ 카드 해지는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고,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를 제8조의 지불 보증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철회 되거나 최종 결제가 완료 될 때까지 카드 해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카드의 분실 및 도난사고)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고객센터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고객센터에 대한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비합리적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회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 분실·도난 신고 후 카드고객센터와 은행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회원은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책임)

- ① 회원과 은행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기망행위 포함)의 경우
 - 2. 카드 등록정보, 이용정보의 유출 및 카드의 부주의한 관리 등 회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 3.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제3자 임의보관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 4. 회원의 가족을 포함한 지인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 5. 카드 비밀번호를 회원이 자의적으로 제3자에게 알려준 경우
 - 6. 회원이 카드 비밀번호를 합리적으로 위장시키거나 그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카드와 함께 카드 비밀번호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
 - 7. 회원이 해외 CD·ATM기에서 카드 사용 후 가져가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한 경우
 - 8. 카드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은행과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카드고객센터 포함)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은행은 아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 2. 은행의 합리적인 통제권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 3. 해외 CD·ATM기에서의 카드 인식 거부 또는 인식 불능
 - 4. 정부나 국가의 법률, 규제법규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은행이 취하는 조치
 - 5. 이 약관에서 특히 제외되거나 제한된 일체의 사항

제18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영문 이름, 영문 주소,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등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 및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카드고객센터포함)에 전화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은행 및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에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기타 은행 또는 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가 개별통지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안내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9조 (연락처)

- ① 회원은 카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앱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카드 표준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또는 카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혹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카드고객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보안의 목적 및 카드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해 회원과의 통화 내용은 녹음 및/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 사용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마스터카드프리페이드 콜센터) 또는 마스터카드 프리페이드(MASTERCARD PREPAID MANAGEMENT SERVICES LIMITED, Access House, Cygnet Road, Peterborough, UK, PE7 8FJ)앞으로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약관 변경승인)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회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상관계에 따릅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0-약관-061호 (2020.04.03)